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전부개정	2007. 3. 20.	항공기상관리본부훈령	제20호
일부개정	2007. 5. 16.	항공기상관리본부훈령	제22호
일부개정	2007. 10. 24.	항공기상관리본부훈령	제24호
일부개정	2008. 3. 24.	항공기상청훈령	제25호
일부개정	2008. 12. 29.	항공기상청훈령	제29호
일부개정	2009. 5. 7.	항공기상청훈령	제30호
일부개정	2009. 10. 28.	항공기상청훈령	제31호
일부개정	2009. 12. 22.	항공기상청훈령	제32호
일부개정	2010. 4. 23.	항공기상청훈령	제33호
일부개정	2010. 8. 7.	항공기상청훈령	제34호
일부개정	2011. 8. 30.	항공기상청훈령	제36호
일부개정	2012. 6. 13.	항공기상청훈령	제37호
일부개정	2012. 9. 28.	항공기상청훈령	제38호
일부개정	2012. 12. 28.	항공기상청훈령	제39호
일부개정	2013. 1. 31.	항공기상청훈령	제40호
일부개정	2013. 10. 16.	항공기상청훈령	제41호
일부개정	2013. 12. 12.	항공기상청훈령	제42호
일부개정	2015. 1. 15.	항공기상청훈령	제44호
일부개정	2015. 6. 26.	항공기상청훈령	제47호
일부개정	2015. 11. 17.	항공기상청훈령	제48호
일부개정	2015. 12. 30.	항공기상청훈령	제49호
일부개정	2016. 3. 1.	항공기상청훈령	제50호
일부개정	2016. 12. 30.	항공기상청훈령	제55호
일부개정	2017. 3. 20.	항공기상청훈령	제56호
일부개정	2017. 4. 27.	항공기상청훈령	제57호
일부개정	2018. 1. 11.	항공기상청훈령	제59호
일부개정	2018. 10. 12.	항공기상청훈령	제61호
일부개정	2019. 8. 9.	항공기상청훈령	제64호
일부개정	2019. 12. 30.	항공기상청훈령	제66호
일부개정	2020. 6. 8.	항공기상청훈령	제67호
일부개정	2020. 7. 27.	항공기상청훈령	제6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4.>

제2조(적용범위)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3.24.>

제3조(소관업무)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 업무와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 업무 외에 항공기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3.24., 2010.4.23.>

1. 항공기상관측·예보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2. 공항지역 기후통계 및 민원처리
3. 항공기상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
4. 기타 항공기상청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원칙) 항공기상청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항공기상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개정 2008.3.24., 2010.4.23.>

제2장 업무집행절차 등

제5조(업무협의 및 보고) ① 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미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3.24.>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항공기상청장이 기상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4.>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기타 항공기상청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5.]

제7조(집행실적보고) 항공기상청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2008.3.24.>

제8조(사업평가) ①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4.>

②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위임전결) ① 항공기상청장은 하부조직의 장(이하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및 전결의 범위·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10조(하부조직 및 소속기관) 항공기상청에 하부조직으로 기획운영과, 예보과, 정보기술과 및 항행기상팀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공항기상대와 공항기상실을 둔다. <개정 2007.10.24., 2008.3.24., 2010.4.23., 2015.1.15., 2020.7.27.>

제11조(기획운영과) ①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중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기타 인사업무
5. 청내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6. 훈령, 고시, 지침 등 입안에 관한 업무
7. 혁신, 제도개선, 대내외 제안에 관한 사항
8.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0.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
12. 주요 회의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기상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항공기상 분야 ISO 품질경영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
15. 항공기상업무종사자 자격 및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7. 물품의 구매·조달 등 계약에 관한 사항
18. 당직·일반보안·소방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9. 직원의 후생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0. 급여, 연금 등 업무에 관한 사항
21. 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
22.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23.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및 체계 정비
24. 문서 수발·분류 및 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5. 수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6. 항공기상예보·특보의 평가
27. 기타 대내외 일반서무 및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6.8.]

제12조(예보과) ① 예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7.>

②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과 내 팀으로 예보팀(4팀)과 공역기상팀(1팀)을 둔다. <개정 2020.7.27.>

1. 항공기상예보·특보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항공기상예보·특보 평가에 관한 정책·지침 수립 및 제도개선
3. 항공기상관측 현업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4. 소속기관 항공예보·특보의 총괄·조정·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상예보·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6. 소속기관 항공기상관측 현업업무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항공기상관측자료의 생산·통보 및 일기상통계표 작성
8. 항공예보장비의 운영·관리

9.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10.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기상정보의 지원·협력
11. 저고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지원·협력
12. 항공기관측 자료의 수집
13. 화산재, 우주기상, 방사능에 관한 업무
14. 항공방재기상업무 수행·지원
15. 항공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분석
16. 항공기상예보분석 기법 개발·보급
17. 항공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
18.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19. 군공항(김해·청주·대구·광주·포항·사천)의 항공기상예보·특보·관측자료의 통보
20. 군공항(김해·청주·대구·광주·포항·사천)의 이륙예보·윈드시어 경보의 생산과 통보

[전문개정 2020.6.8.]

[제목개정 2020.7.27.]

제13조(정보기술과) ① 정보기술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정보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항공기상관측 정책(현업 관측업무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3. 항공기상장비의 수급·관리
4. 항공기상관측장비의 운영·관리 및 검정
5. 항공기상통신망 및 통신장비의 운영·관리
6. 항공기상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운영
7. 항공기상정보서비스의 개발·운영
8. 항공기상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9.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관리
11. 국내외 항공기상자료의 수집·분배
12. 기상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기상관측기술에 관한 사항
14. 항공기후자료의 통계·발간
15. 항공기상자료의 제공·증명

[전문개정 2020.6.8.]

제13조의2(항행기상팀) ① 항행기상팀장은 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항행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상 기술개발 계획의 수립·조정

2. 항공기상 예보기술 및 서비스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선진 항공기상예보시스템 운영·관리
4. 항공기 기반 관측자료의 수집체계 구성·운영·관리
5. 항공 난류 및 착빙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6. 항공기상 기술개발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항공기상 R&D 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6.8.]

제14조(공항기상대) ① 김포공항기상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제주·무안 및 울산공항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김해공항기상대장은 행정주사·기상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7.10.24., 2008.3.24., 2008.12.29., 2015.1.15., 2015.6.26., 2019.12.30., 2020.6.8.>

② 김포·제주·무안 및 울산공항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 2020.6.8.>

1. 항공기상관측 및 보고
2. 항공기상기술의 개발
3. 예보 및 특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당해공항의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5. 항공기상예보·특보의 사후분석
6. 항공기상재해의 조사

7. 항공기후자료의 작성
 8. 항공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9.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10.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11.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12.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
 13.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14. 공무원의 복무·교육훈련 기타 인사업무
 1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7. 기상장비의 유지·관리
- ③ 김해공항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8.>
1.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 및 항공방재기상업무 지원
 2. 김해·청주·대구·광주·포항·사천공항의 일기상통계에 관한 업무
 3.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5.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
 6.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7. 공무원의 복무·교육훈련
 8.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9. 항공기상재해의 조사

제15조 삭제 <2010.4.23.>

제16조(공항기상실) ① 공항기상실장은 행정주사·기상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7.10.24., 2015.11.17., 2019.12.30.>

② 공항기상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0.24., 2019.12.30.>

1. 항공기상관측 및 보고
2. 항공기상기술의 개발
3. 당해공항의 착륙예보의 생산·발표
4. 당해공항의 이륙예보의 생산·발표
5. 당해공항의 예보 및 특보의 통보
6. 항공기상재해의 조사
7. 항공기후자료의 작성
8. 항공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9.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10.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11.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12.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
13.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14. 공무원의 복무·교육훈련

15.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6. 기상장비의 유지·관리

[제목개정 2007.10.24.]

제17조(팀제조직의 운영) ① 항공기상청장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 분장사무의 효과적 수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팀제조직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5.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직이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부여를 할 수 있으며 팀장을 대외직명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18조(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10.24., 2008.3.24., 2018.1.11.>

②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배정은 항공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3.24.>

③ 삭제 <2018.1.11.>

④ 삭제 <2017.3.20.>

[제목개정 2008.3.24.]

제1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0.]

제18조의3(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예보과로 한다.

[본조신설 2020.7.27.]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항공기상청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4.>

② 위원회 등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기상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24.>

제20조(직무대리) ① 항공기상청장 또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결원·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2008.3.24., 2020.7.27.>

1. 항공기상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예보과장이 대리한다.
2.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공기상청장은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8.1.11.>

제4장 인사관리

제21조(인사위원회) ①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3.24.>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근무실적평정 및 기타 항공기상청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24.>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3.24.>

제22조(신규채용) ①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2의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기상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 단서 조항의 기상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3.24., 2013.12.12.>

③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담당할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모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2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속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규채용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기상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24.>

제24조(시험방법)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항공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4.>

제25조(시험과목 등) 신규채용·승진시험의 시험과목·배점, 합격자 결정 및 임기제 신규채용 응시자의 연령제한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3.24., 2013.12.12.>

제26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7조(보직관리의 원칙) 항공기상청장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렬과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한다. <개정 2008.3.24.>

제28조 삭제 <2018.1.11.>

제28조의2(승진임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기상청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항공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

제29조 삭제 <2018.1.11.>

제29조의2(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항공기상청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①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해당임기제 공무원의 재계약·연봉 및 기타 인사사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목개정 2013.12.12.]

제31조(성과상여금의 지급)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항공기상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운영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3.24.>

제5장 복무관리

제33조(복무원칙)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8.3.24.>

제34조(교대근무)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교대근무는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또는 관련 국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4., 2009.10.28.>

제6장 자체규정의 제정 등

제35조(자체규정의 제정)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청의 기본업무에 대한 절차·방법·범위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4.>

제36조 삭제 <2009.10.28.>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37조(예산의 운용) 항공기상청업무를 위하여 일반회계를 운영한다.

제38조(회계담당공무원)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은 회계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9조(준용규정) ① 예산회계관련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1. 예산편성·심의·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예산회계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지침에 의한다.
2. 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한다.

제40조(운영)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향상을 위하여 인건비 예산의 총액범위안에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분야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제41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3.24.>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3.24.>

제42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 항공기상청장은 총액인건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08.3.24.>

부 칙 <항공기상관리본부훈령 제20호, 2007.3.16.>

이 규정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관리본부훈령 제22호, 2007.5.16.>

이 규정은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관리본부훈령 제24호, 2007.10.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25호,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29호, 2008.12.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30호, 2009.5.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31호, 200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1의2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기상서기1, 기상서기보1)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32호, 2009.12.22.>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33호, 2010.4.23.>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34호, 2010.8.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기상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 행정서기보·기상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36호, 201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기상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기능 10급 2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기상서기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에 행정주사·기상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과 행정주사보·기상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기상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과 행정서기보·기상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13.12.12.>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37호, 2012.6.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38호, 2012.9.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39호, 2012.1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40호, 2013.1.31.>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41호, 2013.10.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42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983호, 2013.12.12. 시행) 및 「기상청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27호, 2013.12.11. 공포 2013.12.12.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항공기상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항공기상청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44호, 2015.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정 시행으로 신설되는 항행기상팀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항행기상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예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0.7.27.>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에 행정주사·기상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2명과 행정주사보·기상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2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기상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과 행정서기보·기상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18.1.11.>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47호, 2015.6.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48호, 2015.1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49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800호, 2015.12.30. 공포·시행) 및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30호, 2015.12.30. 공포·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항공기상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50호, 2016.3.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55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698호, 2016.12.27. 공포, 2017. 1. 1. 시행) 및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87호, 2016.12.30. 공포, 2017. 1. 1.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항공기상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56호, 2017.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에 행정서기·기상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기상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명으로 본다. <개정 2019.12.30.>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57호, 2017.4.27.>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59호,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에 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2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기상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으로 본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61호, 201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에 행정주사보·기상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1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8.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에 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1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3월 30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에 행정주사·기상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64호, 2019.8.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에 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2년 8월 19일

까지 존속하며, 2022년 8월 20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의2에 행정주사·기상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66호, 2019.12.30.>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67호, 2020.6.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69호, 2020.7.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07.5.16., 2007.10.24., 2008.3.24., 2008.12.29., 2009.5.7., 2009.10.28., 2009.12.22., 2010.4.23., 2010.8.7., 2011.8.30., 2012.6.13., 2012.12.28., 2013.1.31., 2013.10.16., 2013.12.12., 2015.1.15., 2015.6.26., 2015.12.30., 2016.3.1., 2016.12.30., 2017.3.20., 2017.4.27., 2019.12.30.>

항공기상청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관련)

총계	115
일반직 계	115
청장(임기제 고위공무원)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
행정주사·기상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9
행정주사보·기상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8
행정서기·기상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0
행정서기보·기상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기상전문관·공업전문관·시설전문관·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

[별표1의2] <신설 2007.10.24.> <개정 2008.3.24., 2008.12.29., 2009.5.7., 2009.10.28., 2009.12.22., 2010.4.23., 2010.8.7., 2011.8.30., 2012.6.13., 2012.12.28., 2013.1.31., 2013.10.16., 2013.12.12., 2015.1.15., 2015.6.26., 2015.12.30., 2016.3.1., 2016.12.30., 2017.3.20., 2017.4.27., 2018.10.12., 2019.8.9., 2019.12.30.>

항공기상청 공무원정원표(제18조제3항관련)

총계	117
일반직 계	117
청장(임기제 고위공무원)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
행정주사·기상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6
행정주사보·기상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1
행정서기·기상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2
행정서기보·기상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기상전문관·공업전문관·시설전문관·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

[별표1의3] 삭제 <2017.3.20.>

[별표2]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22조제1항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기상5급	- 대학 및 대학원에서 대기과학분야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외국어(영어·일어 등) 구사능력을 갖춘자(외국박사학위소지자 제외) * 항공기상학 이수자 우대
기상6급	- 대학 및 대학원에서 대기과학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기상7급경력 5년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어(영어·일어 등) 구사능력을 갖춘자 선발 우대 * 항공기상학 이수자 우대
기상7급	- 대학 및 대학원에서 대기과학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기상8급경력 2년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어(영어·일어 등) 구사능력을 갖춘자 선발 우대 * 항공기상학 이수자 우대
기상8급	- 대학 및 대학원에서 대기과학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 대학 및 대학원에서 대기과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기상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 외국어(영어·일어 등) 구사능력을 갖춘자 선발 우대 * 항공기상학 이수자 우대
기상9급	- 대학과학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한 자로서 기상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 외국어(영어·일어 등) 구사능력을 갖춘자 선발 우대 * 항공기상학 이수자 우대